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특례 조치인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관한 안내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대하여 '상환 면제는 대출 종류별로 일괄해서 실시하며,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취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상환 면제 포인트

- ✓ 상환 면제는 자금 종류별로 일괄해서 실시합니다. ① 긴급 소액자금, ② 종합 지원자금의 최초 대출액, ③ 종합 지원자금의 연장 대출액, ④ 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입니다.
- ✓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가구원의 과세 상황은 묻지 않습니다.
- ✓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이외에도 상환 중에 사망이나 실종선고, 자기파산 등으로 인해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거치 기간을 자금 종류별로 연장합니다.

##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

		상환 1차년도 (2022년도)	상환 2차년도 (2023년도)	상환 3차년도 (2024년도)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
① 긴급 소액자금		20만엔			2021년도 또는 2022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종합 지원 자금	②최초 대출액	45만엔 (1인 가구) 60만엔 (2인 이상 가구)			
	③연장 대출액		45만엔 60만엔		2023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④종합 지원자금 재대출				45만엔 60만엔	2024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상환 면제 후에도 자립 상담 지원기관 등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거치 기간 연장에 대하여 (주) 차입자가 거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드립니다.

① 긴급 소액자금		2022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말일까지(2023년 1월부터 상환 시작)
종합 지원 자금	②최초 대출액	2023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말일까지(2024년 1월부터 상환 시작)
	③연장 대출액	
④종합 지원자금 재대출		2024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말일까지(2025년 1월부터 상환 시작)

##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관한 Q&A

Q1 상환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주민세 비과세에 의한 상환 면제 절차는 상환 시작 전(거치 기간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빌린 분께 직접 안내해 드리오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주민세의 비과세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거주하고 계시는 시정촌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도의 과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6월 이후인데, 해당 시정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왜 대출액 전액을 일괄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건가요?

A3 특례 대출은 대출 실시 방법에 있어서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의 최초 대출, 연장 대출, 재대출을 단위로 하여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자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상환 면제 판정 방법에 있어서도 대출 시의 자금 교부액 및 순서를 고려하여 각 자금의 종류별로 일괄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환하게 되었을 경우, 빌린 사람의 상환액이나 시기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Q4 주민세 비과세 범위 내에 소득할 주민세만 비과세인 사람도 포함되나요?

A4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긴급 소액자금과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의 면제 판정에 대해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각각 다른 연도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상환 면제 대상이 되나요?

A5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환 면제는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같은 연도에 비과세인 경우에 면제 대상으로 판정됩니다.